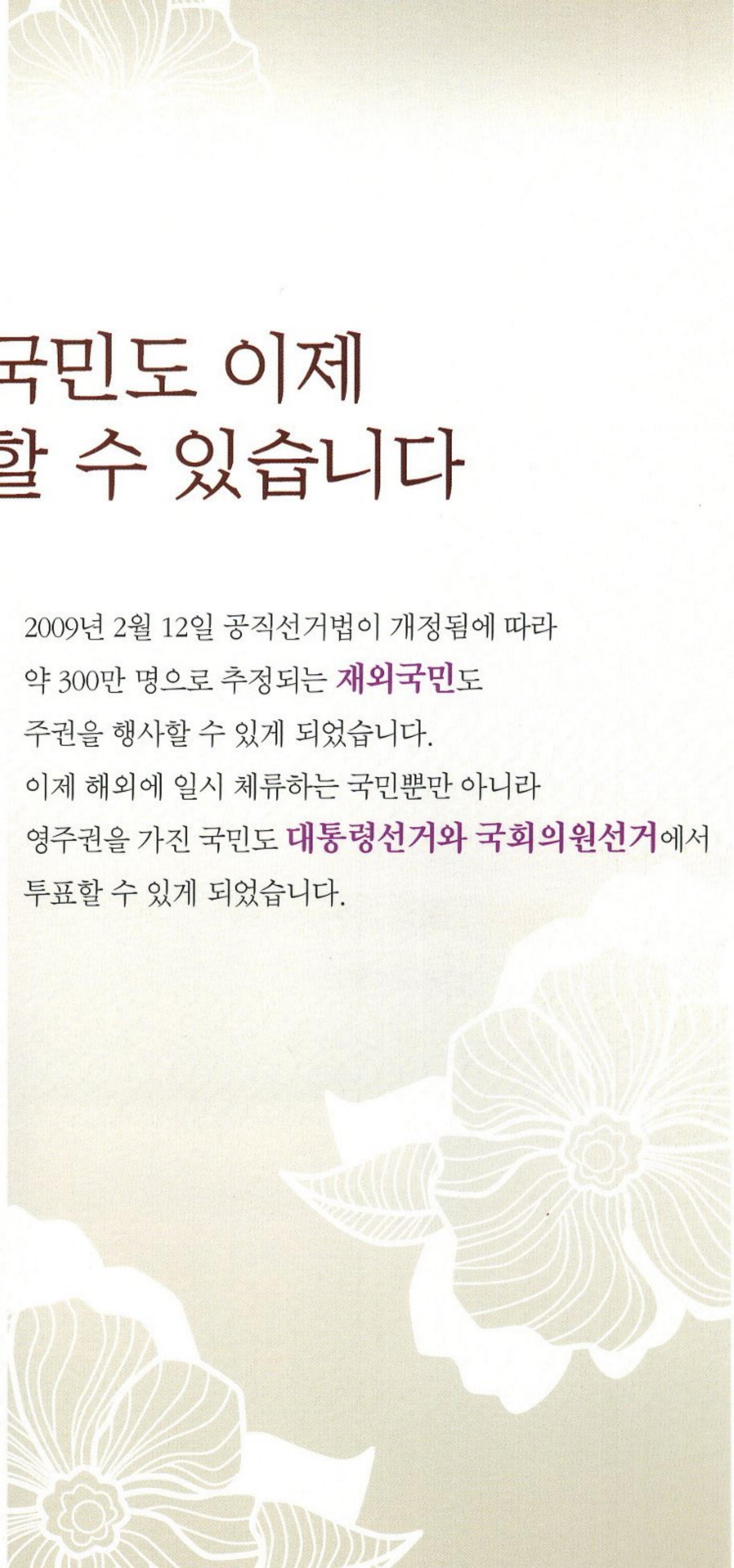




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⑧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⑨ 국외부재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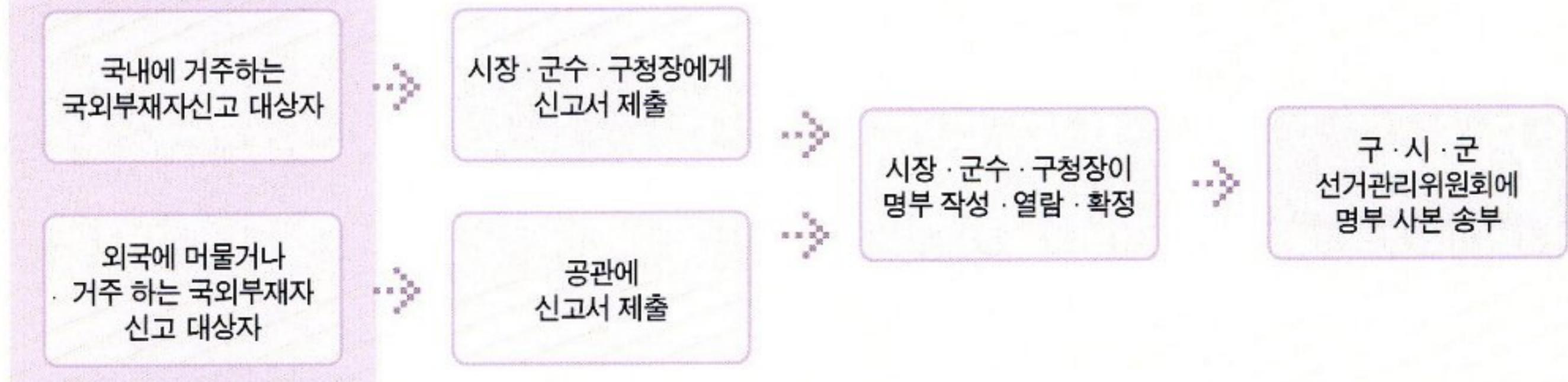
-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
-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⑪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일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국외부재자신고기간에



투표와 개표 절차

❸ 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냅니다.

❹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 공관외의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재외투표기간')을 정하여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전 2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❺ 투표 절차

◆ 재외선거인등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 다음의 사항을 투표용지에 '직접 쓰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다음 투표함에 넣습니다.

-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 온 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으면 무효입니다.

❻ 재외투표의 회송

◆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아래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88 재외투표의 접수 및 개표

◆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함(재외선거인 투표함과 국외부재자 투표함)을 갖추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된 재외투표만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아래 재외투표함에 넣습니다.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및 개표 절차



국외선거운동 방법

⑧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광고
-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⑨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⑩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⑪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 공관 게시판 게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 등에 한함)

한국의 선거과정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843년에 창간되어 전세계적으로 130여만 부가 발행되는 영국 경제·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산하연구기관으로 1948년에 창립된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6년에 이어 「민주주의 지표 2008(Index of Democracy 2008)」을 발표했습니다.

❖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었습니다.

❖ 2006년 발표에서 한국은 「흠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그룹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발표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그룹으로 상향평가 되었습니다.

체제유형	국가수	국가비율(%)	세계인구비율(%)
완전한 민주주의	30	18.0	14.4
흠있는 민주주의	50	29.9	35.5
혼합 체제	36	21.6	15.2
권위주의 체제	51	30.5	34.9

❸ 한국의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는 서구 민주국가와 대등합니다.

❖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선거과정 및 다원성’은 10점 만점의 다음 단계 점수인 9.58점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와 같은 점수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보다 앞서는 점수입니다.

❖ Democracy Index 2008

Full democracies	Rank	Overall score	I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II Functioning of government	III Political participation	IV Political culture	V Civil liberties
Sweden	1	9.88	10.00	10.00	10.00	9.38	10.00
Norway	2	9.68	10.00	9.64	10.00	8.75	10.00
⋮	⋮	⋮	⋮	⋮	⋮	⋮	⋮
Switzerland	8	9.15	9.58	9.29	7.78	9.38	9.71
⋮	⋮	⋮	⋮	⋮	⋮	⋮	⋮
Canada	11	9.07	9.17	9.64	7.78	8.75	10.00
⋮	⋮	⋮	⋮	⋮	⋮	⋮	⋮
Germany	13	8.82	9.58	8.57	7.78	8.75	9.41
⋮	⋮	⋮	⋮	⋮	⋮	⋮	⋮
Japan	17	8.25	8.75	8.21	6.11	8.75	9.41
United States	18	8.22	8.75	7.86	7.22	8.75	8.53
⋮	⋮	⋮	⋮	⋮	⋮	⋮	⋮
United Kingdom	21	8.15	9.58	8.57	5.00	8.75	8.82
⋮	⋮	⋮	⋮	⋮	⋮	⋮	⋮
France	24	8.07	9.58	7.50	6.67	7.50	9.12
⋮	⋮	⋮	⋮	⋮	⋮	⋮	⋮
South Korea	28	8.01	9.58	7.50	7.22	7.50	8.24
Italy	29	7.98	9.58	6.43	6.67	8.13	9.12
Slovenia	30	7.96	9.58	7.86	6.67	6.88	8.82

☞ 「Index of Democracy 2008」 원문은 EIU 홈페이지(www.eiu.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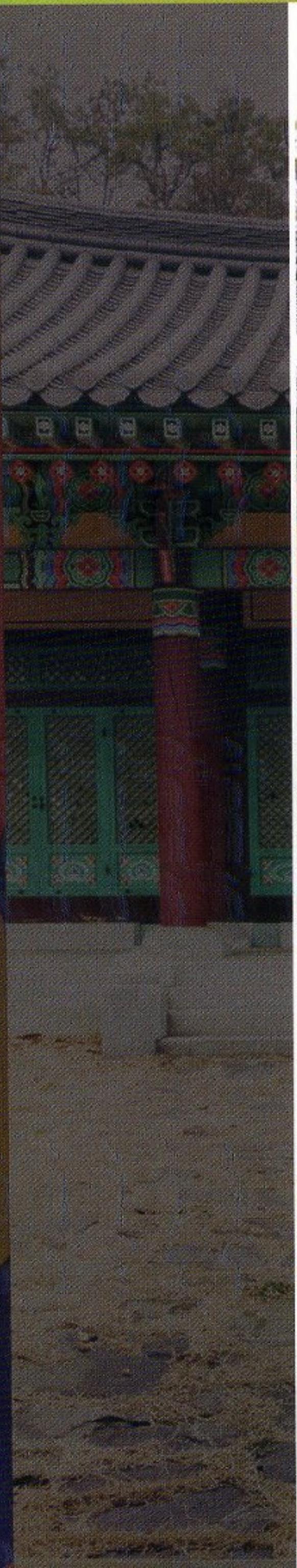
전세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재외선거에서도 꽂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바르고 깨끗한 투표권 행사는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현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특정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4단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6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479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하게 될 재외선거시에는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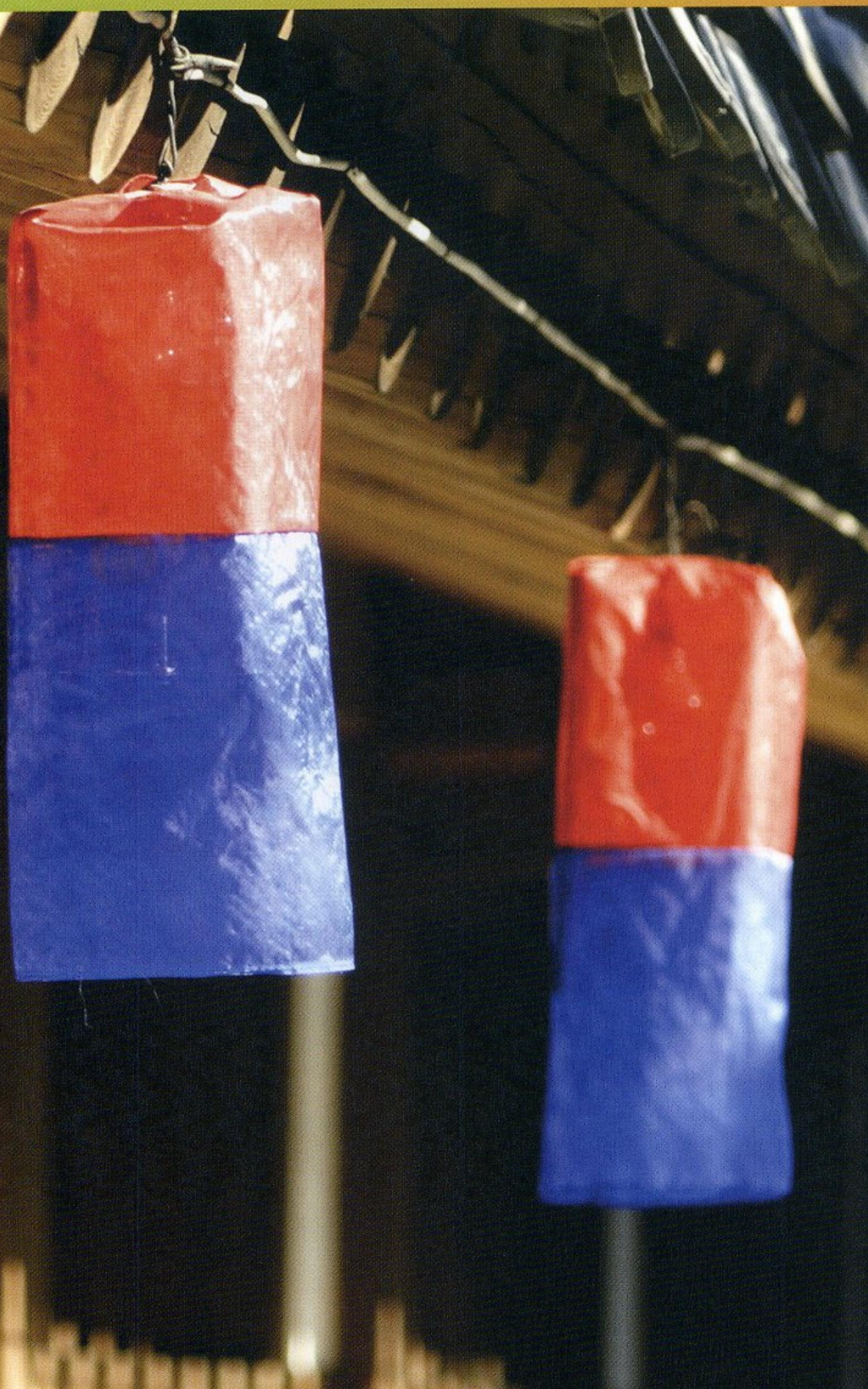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을 뽑는 공직선거 및 교육감·교육의원, 농협조합장 등을 뽑는 위탁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의 관리를 비롯해 정당과 정치자금 사무관리, 국민의식 개선활동, 민주시민교육 등 각종 연수, 정치관계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치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 공직선거관리 ❖ 정당사무관리 ❖ 정치자금사무관리
- ❖ 공명선거홍보 ❖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 ❖ 선거비용관리 ❖ 국민투표관리 ❖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관리
- ❖ 위탁선거관리 ❖ 정당의 대표·공직선거후보자 경선사무의 수탁관리
- ❖ 민주시민교육 ❖ 선거·정치제도 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⑧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뉘어 집니다.

- ❖ 영주권자의 범위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영주 목적 외국 거주자가 포함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 ❖ 국외 일시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국외 체류 예정자)도 일시체류자에 준합니다.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

❖ 국적선택기간 (국적법 제12조)

- ❖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 ❖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군복무필, 병역면제처분,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2년 이내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주권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예]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통령선거
-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통령선거
-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영주권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국외 일시체류 (예정)자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⑧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 이 경우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⑪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영주권자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부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열람·확정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 사본 송부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